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
(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11월 17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2025년 11월 26일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보류
2025년 12월 2일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환경교통국장 김 태 영

나. 제안이유

- 내수 및 수출입 물류의 원활한 운송을 통한 국가산업 단지 활성화 도모
-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통해 시민 정주여건 개선 및 화물운수종사자의 편의 증진 기여
- 화물자동차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지 인근 대형 화물 자동차의 주거환경 침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 필요

다. 주요내용

【취득재산】

- 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
 - 위 치 :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1093번지 일원
 - 대 상 : 연면적 A = 500㎡(건물 1동, 지상 2층)
 - 기준가격 : 13,000백만원(건물 1동 및 차고지 조성)
 - 관리동 신축 1,600백만원, 토목 공사 및 시설부대비 등 11,400백만원
 - 총사업비 : 19,800백만원(도비(전환) 9,100백만원, 시비 10,700백만원)
 -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6,800백만원
 - 관리동 신축 1,600백만원
 - 토목공사 등 10,600백만원, 시설부대비 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 2027년
 - 주요시설 : 주차면수 388대(화물 280, 승용 108), 관리동 조성
 -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23. 10. ~ ‘24.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 ‘25. 4. ~ ‘25. 12.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25. 9. 1. ~ ‘25. 9. 19.)
 -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 ‘25. 4. ~ 6.
 - 2026년도 전환사업 예산 신청 : ‘25. 4. ~ 6.
 -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 ‘25. 10. ~ 12.
 -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보상 : ‘26. 1. ~ 3.
 - 실시설계 용역 : ‘26. 3. ~ 7.
 - 공사 착공 및 준공 : ‘26. 8. ~ ‘27. 8.

라.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 및 제45조
-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3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1건	500	13,000
	3.기타 취득	1건	500	13,000
	토지 건물 기타			

취득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고
	재산 구분	소 재 지	수 량(m ²)					
총계			500	13,000				
취득	건물	선산읍 죽장리 1093 일원	500	13,000	2027년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및 관리동 신축	구미시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관리계획안은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 (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건과는 별개로 공영차고지 내 관리동 신축에 대해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임.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화물 운수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상당한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만큼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추진 과정에서 토지 보상, 도시계획 절차, 실시설계 등 단계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총사업비 증가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기초조사 및 설계최적화·짚은 설계 변경 억제 등 비용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할 경우, 재정 부담·취득 필요성·운영 계획 등의 충분한 검토에 제약이 발생함. 이러한 이유로 두 안건을 한 회기에서 함께 다루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에도, 다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은 절차적 미비로 볼 수 있음.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